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인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4선거구,

도시계획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선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
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조례안의 내용은,

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부채납 가능시설에

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.

○ 최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

일부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

기부채납 가능시설에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을

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- 이러한 상위법령 개정 취지를 감안하고
주거안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,
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